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15

발의연월일: 2020. 9. 10.

발 의 자:김도읍・김태흠・구자근

추경호・金炳旭・김정재

태영호 • 박덕흠 • 권명호

윤한홍 · 정동만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,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 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사회복지법인, 양로시설·아동양육시설·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 지원대상 법인등 과 동일한 취지의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률에 규정하고,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을 감면대상 법인으로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7항(종전의 제6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-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. 이 경우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,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로 한정한다.
 -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. 이 경우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한정한다.

- 나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·부자가족복지시설·미혼모자가족복 지시설
-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마.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3. 그 밖에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② 제1항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- 1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- 3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하 감면)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감면) ① -----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업(이하 이 조에서 "사회복지 사업"이라 한다)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 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 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사회 복지법인등"이라 한다)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<단서 삭제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1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 |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 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 용하는 경우 2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<u>다음 각 목의 어</u>느 하나에 해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. 이

니하는 경우

 3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

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

 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

 사용하는 경우

경우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,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로 한정한다.

-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. 이 경우 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었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 1단체가 전액 부담하는시설로 한정한다.
- <u>나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</u> <u>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</u> <u>시설</u>
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 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 가족복지시설·부자가족복 지시설·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,
-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│ ⑦ -----제6항-----정에도 불구하고 「사회복지사

- 마.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3. 그 밖에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② 제1항에 대한 면제를 적용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를 추징한다.
- 1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 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 용하는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
- 3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)

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	
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	
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	
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	
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	
각 경감한다.	

1. ~ 3. (생 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1. U. (LOTED)